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7월 15일, 송옥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8.3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옥주 의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증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핵심 발전원인 해상풍력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연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동 해양시설 주변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적 관리방안이 부재하여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임.

현행 법률은 해상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 등 국가 주도의 수역 안전관리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개별 해양시설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선박 통항안전 확보와 해양시설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당 수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국가는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해역이용자 간의 조화로운 해역 이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신설, 제114조제8호 개정 등).

한편, 현행 안전관리체제에 따른 사업장 인증심사 시 사업장 내 일부 선종에만 해당하는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사업장 소속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

관리증서 효력도 정지되므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 운영을 위해 중대한 결함이 있는 부분이나 선종 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동일 사업장 소속의 운항 중인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도 즉시 정지되므로 바다에서 운항을 정지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 정지에 관한 범위, 절차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체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7항 및 제8항 개정).

아울러, 계약상 우월한 지위인 선주나 화주 등이 영업 이익 등을 이유로 선장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간섭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 금액 상한액을 상향하여 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8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18조제4항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성민)

가. 안전수역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 근거 신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 안전수역을 설정하고, 해상 풍력발전사업자가 해당 수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상풍력발전시설은 해상에 장기간 설치·운영되는 대규모 구조물로서 선박의 통항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박과 발전시설 간 충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재산피해뿐만 아니라 해상교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의 항행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정지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효력정지 범위 조정

개정안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정지 범위를 일률적으로 사업장 소속 모든 선박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효력정지 범위와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 정지는 안전관리체제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충분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해당 결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박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불필요하게 선박의 운항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증심사에서 식별된 중대한 결함의 내용과 적용되는 선종 등을 고려하여 실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범위에서 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선박 운항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선교)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